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45832 물품반환대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3. 12. 17.
판 결 선 고 2014. 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반품 및 환불에 관한 피고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판매자가 반품보류의사를 통지한 경우 피고는 구매자(원고)에 대한 환불을 보류하며 반품 또는 교환과 관련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구매자에 대한 환불, 판매자에 대한 송금 등의 조치를 취한다.(제26조 사항)"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배송하였다면서 교환신청을 하고, 판매자에게 처음 배송받은 TV 겸용 모니터를 반품하였는데, 판매자는 원고로부터 반품받은 모니터가 파손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교환 내지 반품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픈마켓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위 약관에 따라 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이 종결되기를 기다려서 환불 및 송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이고, 원고로서도 판매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반품 내지 환불에 관한 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유성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